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물
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접
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과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팥·녹두 등 건조한 채두류(菜豆類)
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4,694톤에서 23,099톤으로 늘리는 등 15개 물
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12. 2. ~ 1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제3조 관련)

품목번호	품명	2025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증량물량 (B)	계 (A+B)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쪄낸 것인지에 상관없다)	14,694톤	8,405톤	23,099톤
0713	3콩[비그나(<i>Vigna</i>)속·파세러스(<i>Phaseolus</i>)속]			
0713	31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i>Vigna mungo</i>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i>Vigna radiata</i> (L) Wilczek)종]			
0713	31 1000종자용			
0713	31 9000기타			
0713	32팥[아주기(<i>Adzuki</i>)] [파세러스(<i>Phaseolus</i>)·비그나 앵구라리스(<i>Vigna angularis</i>)]			
0713	32 1000종자용			
0713	32 9000기타			
1003	보리			

1003	10		종자	30,000톤	22,600톤	52,600톤
1003	10	1000	맥주보리			
1003	90		기타			
1003	90	1000	맥주보리			
1005			옥수수	247톤	130톤	377톤
1005	10	0000	종자용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	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0712	90	20	그 밖의 채소			
0712	90	209	기타			
0712	90	2091	스위트콘(종자용)			
1005			옥수수	12,900,000톤*	104,350톤	13,004,350톤
1005	90		기타			
1005	90	1000	사료용			
1005	90	2000	팜콘용			
1005	90	9000	기타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				
1103	1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	13	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빵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1104	2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빵은 것)				
1104	23	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	1		전분				
1108	12		옥수수로 만든 것				
1108	12	1000	식품용				
1108	12	9000	기타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	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0712	90	20	그 밖의 채소				
0712	90	209	기타				
0712	90	2092	스위트콘(기타)				
1105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10톤	1,500톤	1,510톤	
1105	10	0000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1105	20	0000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40,000톤	68,000톤	108,000톤	
1107	10	0000	볶지 않은 것				
1107	20		볶은 것				
1107	20	1000	훈연(燻煙)한 것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227.4톤	3,072.6톤	3,300톤	

1108	1		전분			
1108	11	0000	밀로 만든 것			
1108	19		그 밖의 전분			
1108	19	9000	기타			
1108	20	0000	이눌린(inulin)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90,000톤*	19,250톤	209,250톤
1108	1		전분			
1108	13	0000	감자로 만든 것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예: 프리젤라티나이징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3505	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3505	10	3000	배소전분			
3505	10	40	프리젤라티나이징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3505	10	4010	식품용			
3505	10	4090	기타			
3505	10	50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3505	10	5010	식품용			
3505	10	5090	기타			
3505	10	90	기타			
3505	10	9010	식품용			
3505	10	9090	기타			
3505	20		글루(glue)			
3505	20	1000	전분 글루(glue)			
3505	20	2000	덱스트린 글루(glue)			
3505	20	9000	기타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2,400톤	32,000톤	34,400톤
1108	1		전분			
1108	14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으로 만든 것			
1108	14	1000	식품용			
1108	14	9000	기타			
1108	19		그 밖의 전분			
1108	19	1000	고구마로 만든 것	4,376톤	18,624톤	23,000톤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85,787톤	32,966톤	218,753톤
1201	10		종자			
1201	10	1000	콩나물용			
1201	10	9000	기타			
1201	90		기타			
1201	90	3000	콩나물용			
1201	90	9000	기타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테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탈각한 낙화생 기준 4,907.3톤	탈각한 낙화생 기준 6,000톤	탈각한 낙화생 기준 10,907.3톤
1202	30		종자			
1202	30	1000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1202	30	2000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	4		기타			
1202	41	0000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1202	42	0000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일 ·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1		견과류 · 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	11		땅콩			
2008	11	9000	기타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	40	0000	참깨	6,731톤	63,269톤	70,000톤
1214			스위드(swede) · 맨골드(mangold) ·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 건초 · 루우산(lucerne)(알팔파) · 클로버(clover) · 샌포인(sainfoin) · 사료용 케일(kale) · 루핀(lupine) · 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900,000톤*	20,000톤	920,000톤
1214	90		기타			
1214	90	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1214	90	90	기타			
1214	90	9090	기타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308	00	9000	기타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	90		기타	12,000톤*	78,490톤	90,490톤
2309	90	20	보조사료			
2309	90	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2309	90	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2309	90	209	기타			
2309	90	2099	기타			
2309	90	90	기타			
2309	90	9090	기타			

주) 2025년 시장접근물량의 현행 물량 중 “*” 표시된 물량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한계수량을 말한다.